

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(안) 검 토 보 고

I . 예비비 지출 현황

- 지출결정액 : 2억 2천 7백만원
 - 지출액 : 2억 2천 7백만원
 - 이월액 : 0원
 -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: 0원
-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없음.

〈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〉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	통계목	지출결정액 ㉠	지출원인 행위액 ㉡	지출액 ㉢	이월액 ㉣	집행잔액 ㉤=㉠-㉢-㉣
계		227	227	227	-	-
故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·운영	사무관리비	199	199	199	-	-
	행사관련시설비	28	28	28	-	-

II . 검토의견

가. 故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·운영

- 행정국은 제13대 故 노태우 前대통령 서거(2021.10.26.) 및 정부의 ‘국가장’ 결정에 따라,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·운영하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(2억 2천 7백만원)로 지출하였음.

(분향소 설치·운영 개요)

- 명 칭 : 故 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
- 설치기간 : '21.10.28.(목) 09시~10.30.(토)21시까지
- 운영기간 : '21.10.28.(목) 09시, 이후 매일 09시~22시
※ 30.(금)21시까지
- 장소/규모 :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앞 / 너비 22m×높이10m

-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(제144조1) 및 「지방재정법」(제43조제1항2)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대통령 서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예비비의 집행조건인 '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'에 해당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다만, 분향소 설치·운영(21.10.27~10.31) 이후,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출결정(21.12.21)이 이루어졌고, 계약서도 지출 결정일 전날 체결한 것으로 관련 계약 및 지출결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.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9조에서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·과장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행정국의 지출 요구일(21.12.17) 지연 및 해태 사유가 적정했는지, 국가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9조(자금수급계획)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·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에 따라 본청 실·과장, 의회사무처(국·과)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지출계획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·과장, 의회사무처(국·과)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※ 행정국은 분향소 설치·운영과 지출결정일자간 기간 소요 사유는 분향소 비계 파트, 목공 파트, 제단 파트 등 파트별 내역 수합, 조정 등 내역서 작성에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히고 있음.

※ 행정국은 분향소 설치·운영에 따라 소요예산(2억2천7백)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 요청(2021.12.22.)을 하였으나,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함.

(단위:백만원)

과 목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집행 잔액	행정국 지출 요구일	지출 결정일자
조 직	세부사업	통 계 목					
총 1개 사업			227	227	-		
행정국 총무과	故노태우 前대통령	사무관리비	199	199	-	'21.12.17	'21.12.21
	분향소 설치·운영	행사관련시설비	28	28	-	'21.12.17	'21.12.21

○ 또한, 행정국은 용역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, 민간 업체에 분향소 설치·운영 용역 대행 이후, 사후 계약 체결(2021.12.21)하였는 바, 용역 계약 절차 위반 및 부당회계 처리에 해당하는 바, 절차 위반 여부와 함께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한편, 관련 법령(「국가장법」)에서는 전직·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 국가장으로 할 수 있고, 분향소 설치·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인 바, 예비비 지출을 통해 분향소 설치·운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「국가장법」 제2조(국가장의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(중략)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(國家葬)으로 할 수 있다.

1. 전직·현직 대통령 (이하 생략)

제4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(殯所)를 설치·운영하며 운구(運柩)와 영결식(永訣式) 및 안장식(安葬式)을 주관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- 특히,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, 강원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경상남도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세종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가 분향소를 설치·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 바,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예비비 지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「국가장」 실시에 따른 분향소 설치·운영과 「기관장」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고, 운영상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법령개정 정비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수석전문위원	김태한	전문위원	김정덕
--------	-----	------	-----

[참고자료]

예비비 지출요구서

(단위:원)

구분 조직	예산과목					예산액 ①	지출액 ②	예산 잔액 ①-②	소요액	예비비 요구액	비고
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				
계										227,700,000	
행정국 총무과	행정지원 체계강화	행정관리 지원	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운영	일반 운영비 (201)	사무 관리비 (201-01)	-				199,980,000	
행정국 총무과	행정지원 체계강화	행정관리 지원	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운영	시설비 및 부대비 (401)	시설비 (401-04)	-				27,720,000	
<p>〈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〉</p> <p>○ 제13대 노태우 前대통령 서거 및 정부의 ‘국가장’ 결정에 따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·운영하고, 이에 대한 비용정산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(’21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1년 12월 17일 행정국장</p> <p>기획조정실장 귀하</p>											